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6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윤종균 · 진선미 · 서미화
한준호 · 신정훈 · 김태년
남인순 · 김태선 · 문진석
허영 · 김우영 · 전용기
이기현 · 이광희 · 소병훈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시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직역연금 간 형평성 측면에서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타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족 중 자녀와 손자·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27조의4제1항제4호, 안 제33조의4 신설, 안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제4호 중 “19세가”를 “25세가”로 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가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24조의6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퇴역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24조의6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3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를 “[제27조제2항·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손녀 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 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 ----- ----- -----, ----- ----- ----- ----- -----.
1. <u>19세</u> 미만인 사람	1. <u>25세</u> -----
2. <u>19세</u>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 애 상태에 있는 사람	2. <u>25세</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 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 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 실)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녀 또는 손자·손녀가 <u>19세가</u>	4. ----- ----- ----- <u>25세가</u>

되었을 때

5. (생략)

② (생략)

<신설>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24조의6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퇴역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24조의6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생략)

②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27조제2항 및 제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7조제2항·제3

<u>3항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u>)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u>항,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